

● 제295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0. 6. 22.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I. 결산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20. 5. 29.
- 회부일 : 2020. 6. 9.
- 의안번호 : 1620

II. 결산현황

1. 총괄

-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2,80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8,408만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76억 6,28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0억 7,31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83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5,138만원임.

2. 세입 결산

-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809만원 보다 1억 5,833만원이 증액된

1억 8,64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환급액 303만원을 제외한 1억 8,408만원 (98.7%)을 실제수납하고 57만원(0.3%)이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77만원임.

○ 주요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418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275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322만원) 및 기타 사업수입(1,820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억 5,991만원으로, 위약금(1,295만원), 불용품매각대 등 기타 수입(1억 4,330만원) 및 지난연도수입(366만원)임.

3. 세출 결산

○ 2019회계연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276억 4,794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491만원이 증액돼 예산현액은 276억 6,284만원임.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90.6%인 250억 7,311만원이 집행됐고, 3억 3,836만원 (1.2%)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22억 5,138만원(8.1%)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42억 3,976만원 중 130억 7,142만원을 집행했음.
-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 사업’은 예산현액 86억 1,186만원 중 77억 5,120만원을 집행했음.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33억 5,199만원 중 29억 1,322만원을 집행했음.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 변경 : 특정업무경비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조사특위 출석 증인 실비
변상금, 감리비 등 부족분에 사용됨(4건, 1,706만원).

마.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액 :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의회 의회청사시설개선 미완료
등으로 인해 사고이월함(3건, 3억 3,836만원).

5. 기금결산 : 해당 없음.

6.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1,186억 5,200만원으로(표-1),

- 토지(3,638㎡, 1,136억 5,500만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181억 8,500만원 증가했음.
- 건물(14,858㎡, 42억 3,600만원), 그 밖의 기타 재산¹⁾(7억 6,100만원)의 증감분은 없음.

1) 태양광발전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

<표-1> 2019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9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00,467	-	-	118,652	
행정 재산	계	100,467	-	-	118,652
	공공용재산	-	-	-	-
	공용재산	100,467	-	-	118,652
	토지(3,638㎡)	95,470	18,185	-	113,655
	건물(14,858㎡)	4,236	-	-	4,236
	기타	761	-	-	761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	-	-	-

8. 물품 증가 및 현재액

- 2019년도 말 기준 정수물품은 317개이며, 현재가액은 전년 대비 3억 4,600만원 (29개)이 감소해 23억 9,800만원임(표-2).

<표-2> 2019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8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9년도말 보유현황
			구매 등 취득	정수제외	불용	소계	
일반 회계	수량	346	11	△19	△21	△29	317
	금액	2,744	97	△412	△31	△346	2,398

※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9호, '19.7.4.)에 따라 4종(전기자동차 등) 추가 및 2종(복사기 등) 제외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세입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809만원으로, 1억 5,833만원이 증액된 1억 8,64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8,408만원(98.7%)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금 177만원(0.95%), 미수납액은 57만원(0.3%)임(표-3).

<표-3>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율
합 계	2,809	18,642	18,408	177	57	98.7
세외수입	2,809	18,642	18,408	177	57	98.7
경상적 세외수입	2,576	2,418	2,418	-	-	100
재산임대수입	246	275	275	-	-	100
공유재산임대료	246	275	275	-	-	100
수수료수입	640	322	322	-	-	100
증지수입	-	-	-	-	-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640	322	322	-	-	100
사업수입	1,690	1,820	1,820	-	-	100
기타사업수입	1,690	1,820	1,820	-	-	100
이자수입	-	-	-	-	-	-
기타이자수입	-	-	-	-	-	-
임시적 세외수입	233	16,224	15,991	177	57	98.4
과징금및과태료등	233	1,295	1,295	-	-	100
변상금	233	-	-	-	-	-
위약금	-	1,295	1,295	-	-	100
기타수입	-	14,330	14,329	0.6	-	99.9
불용품매각대	-	1,478	1,478	-	-	100
그외수입	-	12,852	12,852	0.6	-	99.9
지난연도수입	-	599	366	177	57	61.1
지난연도수입	-	599	366	177	57	61.1

-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총 2,418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현금인출기) 275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322만원, 기타 사업수입(「서울의회보」 민간광고) 1,820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총 1억 5,991만원으로, 위약금(연구용역 의무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환급 등) 1,295만원, 불용품매각대(중형버스 교체에 따른 기존차량 매각대금) 1,478만원, 기타 잡수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금 전환에 따른 환급금) 1억 2,852만원, 지난연도 수입 366만원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은 미수납액이 없었으나, 2018년 90.3%, 2019년 98.7%로 징수실적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표-4> 최근 3년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율 (B/A)
2019	2,809	18,642	18,408	57	177	-	98.7
2018	2,753	6,903	6,232	671	-	671	90.3
2017	2,431	6,497	6,497	-	-	-	100.0

- 또한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017년과 2018년에는 2배 이상, 2019년에는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그 원인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음(표-3).

2)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사업수입’은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했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현액(2,576만원)과 징수결정액(2,418만원)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인 조달이 예측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세입추계가 이뤄져야 할 것임(표-5).

<표-5>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단위 : 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율
경상적 세외수입	2,576	2,418	2,418	-	-	100
자산임대수입	246	275	275	-	-	100
공유재산임대료	246	275	275	-	-	100
수수료수입	640	322	322	-	-	100
증지수입	-	-	-	-	-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640	322	322	-	-	100
사업수입	1,690	1,820	1,820	-	-	100
기타사업수입	1,690	1,820	1,820	-	-	100
이자수입	-	-	-	-	-	-
기타이자수입	-	-	-	-	-	-

3) 임시적 세외수입

- 당초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1,295만원), 노후차량(중형버스) 교체에 따른 불용품 매각(1,478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금 전환(국민연금→공무원연금, 1억 2,852만원)등이 새롭게 발생했기 때문임.
- 세입예산 편성 당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라도 실제 세입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표-6).

<표-6>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단위 : 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율
임시적 세외수입	233	16,224	15,990	177	57	98.4
과징금및과태료등	233	1,295	1,295	-	-	100
변상금	233	-	-	-	-	-
위약금	-	1,295	1,295	-	-	100
기타수입	-	14,330	14,329	0.6		99.9
불용품매각대	-	1,478	1,478		-	100
그외수입	-	12,852	12,851	0.6		99.9
지난연도수입	-	599	366	177	57	61.1
지난연도수입	-	599	366	177	57	61.1

○ 임시적 세외수입의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첫째, 의원용 노트북·태블릿PC 미반납에 따른 변상금(233만원)은 ‘지난연도 수입’에 해당하나 업무상 착오로 인해 2019년도 징수예상액으로 편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둘째, 위약금(1,295만원)은 2018년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 총 32건 중 1건²⁾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불이행 등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2018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까지 용역 성과품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고이월(1,491만원)했으나, 이후 계속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후 선금금과 계약보증금을 반환 조치한 것임.³⁾ 그러나 사고이월 후 전액 불용되고 오히려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임.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방안」(계약업체: 디자인오아시스, 계약금액 : 약 2,890만원)

3) 이와 관련해 전년도 결산검토보고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계약기간 종료 전 이미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했고 별도의 기간 연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만료 다음일에 계약을 해지했거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과 기 지급된 선금금을 회수했어야 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를 사고이월한 것임.

- 셋째, 불용품매각대(1,478만원)는 2018년 예산에 ‘공용차량(중형버스 포함 3대) 교체’가 예정돼 있었고, 특히 중형버스의 경우 당해연도 불용품매각이 지연돼 2019년에 매각(1,478만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으므로 중형버스 불용품매각에 대한 2019년 세입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으나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
-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넷째, 그외수입(1억 2,852만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금이 기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인사제도상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섯째, 지난연도수입⁴⁾은 국내간행물 휴간 구독료, 전직 시의원의 사무용 전산기기 미반납 등에 따른 것으로, 총 599만원(16건)을 징수결정해 366만원을 수납(10건)하고,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한 177만원은 불납 결손처분(3건)했으며, 57만원의 미수납(3건)이 발생함 것임. 미수납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표-7).

<표-7> 2019회계연도 미수납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목명	항목	미수납액	과세일자	수납일자
지난연도수입	국내 간행물 휴간 구독료	6	2019-12-18	-
	사무용 전산기기 미반납(2건)	560	2014-08-04	-
합 계	-	566	-	-

- 의회사무처는 전직 시의원에게 지급된 물품 관리와 반납에 철저를 기했어야 하나, 반복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용물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된 미수납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세입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4) 지난연도수입이란 전년도 이전에 부과·미수납하여 현년도 세입으로 이월한 것을 말함.

-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제39조5)에 따른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통상 5년)가 이미 경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등 향후 지난연도수입 수납 및 체납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세출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 당초 예산액보다 1,491만원 증액된 276억 6,284만원으로, 이 중 250억 7,311만원이 지출됐고, 3억 3,836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22억 5,138만원이 불용 처리됐음.
-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 추이는 아래의 <표-8>과 같으며, 2019년도 불용률은 전년대비 1.6%포인트 증가(6.6% → 8.2%)했음.
- 서울시(일반회계) 평균 불용률⁶⁾과 비교해 보면, 의회사무처의 불용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5)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6) 출처 : 2017, 2018,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표-8>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추이

(단위: 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예산현액	이월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시 평균불용율
			감	증					
2019	2,764,794	1,491	-	-	2,766,284	33,836	2,507,311	225,138 (8.2)	2.3
2018	2,700,597	25,280	15,480	15,480	2,725,877	1,491	2,544,119	180,267 (6.6)	2.1
2017	2,518,446	1,747	390	390	2,520,194	25,280	2,257,034	237,879 (9.4)	2.3

2) 이용·전용·이체

-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이용·전용·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음.

3) 변경

- 예산 변경은 1,706만원(4건)으로,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8명)에 따른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부족분(34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 출석 증인 증가에 따른 실비변상금 부족분(276만원), 시의회 청사 노후시설 정비공사 관련 감리용역 수행을 위한 감리비(517만원), 3급 이상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기준 변경⁷⁾사항(지급 단가의 50% 범위 내 추가 조정지급 가능) 미반영에 따른 사후 조정 및 4급 수석전문위원(1명)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573만원) 등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사용했음(표-9).
- 원칙적으로 예산은 사업 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해 편성해야 하고 계획적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7)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또한 집행부의 재량에 따라 예산 변경을 남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의결 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산의 변경 사용은 회계연도말 기준 불용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실시 함이 원칙이고, 대부분이 11월말 또는 12월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⁸⁾으로 3급 이상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지급이 가능한 사항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예산 심의·확정이후 집행기준에 반영해 변경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개정사항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할 것임.

<표-9> 2019회계연도 예산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계			2,210,025	17,058	17,058		
의정 담당관	의정활동지원기능 강화 직원 연수	사무관리비	23,800	3,400	-	2019-11-27	2019년 시의회사무처 인력증 원(8명)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의회운영지원	특정업무경비	196,425	-	3,400		
의정 담당관	의회운영지원	의원상해부담금	54,000	2,763	-	2019-12-18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 출석 중인 실비변상금 지 급을 위한 부족분
	의회운영지원	배상금 등	1,700	-	2,763		
의정 담당관	의회청사시설개선	시설비	1,393,700	5,170	-	2019-12-18	의원회관 1층 리모델링 전 문적 감리 필요에 의한 감리 비 변경 사용
	의회청사시설개선	감리비		-	5,170		
의정 담당관	기본경비	국내여비	443,800	5,725	-	2019-11-27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3급 이상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0% 범위내 조정 지급) 및 4급 수 석전문위원(1명) 신규 채용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96,600	-	5,725		

8) 지방자치단체 3급 이상 실·국장에 대하여 지급 단가(750천원)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지급 가능토록 개정되었음.

4) 이월

- 사고이월은 총 2건, 3억 3,836만원으로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공공운영비) 사업에 의장표창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388만원), ‘의회 청사시설 개선’(시설비 및 감리비) 사업에 의원회관 현관 및 로비/접견실 등 개선공사 관련 추가과업 수행 등에 따른 사업지연(3억 3,448만원)때문임(표-10).

<표-10>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사고이월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의정 담당관	합 계	1,405,700	931,884	338,361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공공운영비)	12,000	7,760	3,880	2019년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준공기한(20.3.4) 미도래
	의회 청사시설개선(시설비)	1,388,530	924,124	329,481	의원회관 현관 및 로비/접 견실 등 개선 공사관련 추가 과업 수행 등에 따라 사업 지연
	의회 청사시설개선(감리비)	5,170	-	5,000	

- 그러나 ‘의장표창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지방재정법」 개정(‘14.5.28)으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조정됨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후 연도말까지 지출을 완료해야 함에도 익년도 3월까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향후 각종 공사·용역·물품계약 등의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지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사고이월은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서,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임의로 활용돼선 안 될 것임.

5) 과다불용 사업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므로 사업의 단계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과 불용사유는 <표-11>과 같으며, 낙찰차액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 특히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불용률 71.2%),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불용률 54.3%), ‘국내 의정활동 교류’(불용률 47.0%),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사업(불용률 34.0%)은 전년도⁹⁾에 이어 2019년에도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예산불용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동일한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표-11> 2019회계연도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천원, %)

예산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의회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구매	450,310	136,873 (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회관 1층 로비공사 이월에 따른 집기 교체 일정 연기 ○ 내용연수가 경과하였으나 사용가능한 일부 비품 미교체 및 청사 재배치에 따른 집기 미교체 등에 따른 예산 미집행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직원연수	20,400	7,916 (3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일부 부서 직원연수 미실시 및 사무처 간부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의정정보화지원	1,867,329	504,567 (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장 노후 LED 전광판 교체사업은 예산 편성 시점에 LED 규격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가격조사 후 최저금액인 988,000천원으로 편성 ○ 사업을 시행하면서 LED 크기와 소자를 정한 후 가격조사하여 757,200천원으로 발주하였으며, 입찰 참여업체의 투찰금액인 469,464천원으로 계약함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발생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20,000	14,258 (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안내 홍보책자는 격년으로 제작하는데, '19년도에는 재고량이 충분하고 예상 수요가 적어 추가 제작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9) 2018회계연도 불용률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25.0%,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22.8%, 국내 의정활동 교류 46.0%,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23.1%

예산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	116,790	63,468 (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도시 사정으로 초청 취소 및 일정 축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 등 집행잔액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 취소(마르세유) : '19.12월 방문하기로 협의('19.3월) 하였으나, 해당의회 선거 일정 등의 이유로 초청 취소('19.11월) - 일정 축소(호놀룰루) : '19년 호놀룰루 방문('19.10월/4박 6일)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일정을 추진하였으나, 해당의회 요청에 따라 1일 일정(의장면담, 환영만찬)으로 축소
국내 의정 활동 교류	255,540	120,350 (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안업무 추진에 따라 의원 공무출장 및 국내 교류활동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정책위원회 운영강화	144,360	33,939 (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정책연구위원회('19.1월 신설) 위원 위촉 등 사전 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실제 활동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집행잔액 발생
시민과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53,800	18,320 (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토론회 규모 확대를 위해 예산이 20,000천원 증액되었으나, 발표자 수당, 자료집 제작 등의 증가액이 예산증가액보다 적어 불용액 발생

6) 주요 사업별 검토

가. 의회비

-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10가지로 유형화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19년 예산현액 총 100억 4,160만원 중 95억 8,805만원을 집행 하였음(집행률 95.5%).
- 먼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90%가 넘는 양호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음(표-12).¹⁰⁾

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의 경우 2018년 예산책정 당시 월정수당이 3,914,19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제 월정수당 산정기준액이 3,864,950원으로 삭감되어 15.0%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음. 의원국외여비의 경우에는 자매도시 방문 불참(7명)과 비교시찰 불참(10명)으로 15.5%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음.

- 그러나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와 강사료로 사용되는 의원역량개발비,¹¹⁾ 의원 국내공무출장 시 지급되는 의원국내여비는 각각 23.8%(공공위탁·자체교육 : 27.5%, 민간위탁 : 17.2%), 49.2%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표-12).

<표-12> 2019년 의회비 10가지 유형 경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분 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총 계		10,041,603	9,588,050	453,553	95.5	4.5
의정활동비		1,980,000	1,980,000	0	100.0	0.0
월정수당		5,166,731	5,101,259	65,472	98.7	1.3
의정운영공통경비		1,015,242	1,010,925	4,317	99.6	0.4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96,120	394,650	1,470	99.6	0.4
의원역량 개발비	소 계	230,000	54,222	175,778	23.8	76.2
	공공위탁, 자체교육	142,000	39,054	102,946	27.5	72.5
	민간위탁	88,000	15,168	72,832	17.2	82.8
의장협의체부담금		200,203	200,203	0	100.0	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88,116	159,881	28,235	85.0	15.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79,203	177,079	2,124	98.8	1.2
의원국외여비		487,988	412,402	75,586	84.5	15.5
의원국내여비		198,000	97,429	100,571	49.2	50.8

- 불용률 76.2%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 의원역량개발비의 세부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위탁교육의 경우 3개 프로그램에 총 12명의 의원이 참가하였고 민간위탁교육의 경우 11개 프로그램에 총 61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들 프로그램 중 10명 이상의 의원이 참가한 위탁교육은 3개에 불과함(표-13).

11) 의원역량개발비는 그동안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의원위탁교육 관련 경비로 편성되었으나, 2018년부터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편성목으로 신설되었고, 2019년부터는 지방의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교육기관에 의한 위탁교육도 허용되고 있음.

<표-13> 2019년 의원역량개발비 세부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교육기관	과정명 (참가인원)	기간	집행액 (지원금액)	비고
총 계				54,222	
소 계				39,054	
지방의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3기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 (10명)	19.3.~8.	35,000	교육비
	서울시	2019년 시민녹색프로그램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1명)	8.30.~12.13.	250	교육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기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 (1명)	19.9.~20.2.	3,050	교육비
자체교육	서울시의회 사무처	청렴특강: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변화하는 국민의식 (의원 및 사무처직원 120명)	4.30.	비예산	-
	서울시의회 사무처	폭력예방교육: 일상의 폭력들에 예민해도 괜찮아 (21명)	5.23.	504	강사료
	서울시의회 사무처	청렴교육: 청렴서약식, 청렴을 주제로 한 리더십 특강 (43명)	12.10.	비예산	-
	서울시의회 사무처	서울시의회 세미나 특강 강사료 지원 (6명)	3.22.~3.23.	250	강사료
소 계				15,168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결산검사(심사) 예비학교 (1명)	3.15.	15,168	
	지방의회연구소	2018 회계연도 결산심의 합동연수과정 (2명)	4.9.~4.10.	200	교육비
	지방의회연구소	2018 회계연도 결산심의 합동연수과정 (2명)	4.9.~4.10.	550	교육비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정치적 이성과 말의 힘 (10명)	4.11.~5.30.	5,000	교육비
	(사)지방자치 발전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원 정기 아카데미 (6명)	4.26.	600	교육비
	(사)지방자치 발전소	청년 지방의원 정기아카데미 (4명)	7.19.~7.20.	400	교육비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2019년 하반기 워크숍 (1명)	8.19.~8.20.	200	교육비
	사단법인 민주평화연구소	2019 민주평화연구소 지방의원 워크숍 (12명)	9.6.~9.7.	3,000	교육비
	쥬에스제이더블유 인터넷셔널	영어인터넷강의 (1명)	9.30.~9.29.	279	교육비
	(사)지방자치 발전소	성인지 예산 완전 정복 (20명)	11.02.	3,000	교육비
	(사)민주평화 연구소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1명)	11.23.	50	교육비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대한민국 조례입법 사관학교 (2명)	12.18.~12.20.	1,580	교육비
	쥬에스제이더블유 인터넷셔널	영어인터넷강의 (1명)	11.4.~12.31.	309	교육비

- 공공위탁교육과 민간위탁교육이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처음 실시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매우 저조한 참여 실적인 바, 향후에는 새롭게 마련된 ‘교육연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토대로 명사 초청 강연, 시의원과 집행부 간부가 함께 참여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조찬 강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민간위탁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기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및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의원국내여비는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국내교류 활동이 저조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불용률이 일관되게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지난 성과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사업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표-14).

<표-14> 최근 3년간 의원국내여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9	198,000	97,429	100,571	50.8
2018	187,800	77,830	109,970	58.6
2017	372,000	82,482	289,518	77.8

-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지난 예산집행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높은 불용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의 모범 사례를 전파하고 각 시·도의회 의원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원국내여비를 책정하는 노력이 요구됨.

나.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은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는 내·외빈과 학생, 주요 관공서, 국제교류 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의회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 만화,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배부하는 사업임.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018년 평균 39.3%의 높은 불용률을 나타냈고, 격년제로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사업 특성상 2019년에는 홍보 브로슈어의 일부 부족분만 제작하여 71.2%의 매우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였음(표-15).
 - 홍보 브로슈어는 국어, 영어, 중국어 등 총 9개 언어로 제작하는데 2019년에는 부족한 국어판과 영어판에 대해서만 각각 500부씩 제작하였음.

<표-15> 최근 3년간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9	20,000	5,742	14,258	71.2
2018	88,400	66,296	22,104	25.0
2017	20,000	9,296	10,704	53.5

-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안내 홍보책자의 연도별 잔여량과 수요량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바탕한 제작 부수와 비용을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오류를 범한 바, 향후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재고 정리와 엄밀한 수요 예측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도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른 한편, 종이로 제작된 홍보책자를 관리·배포하는 경우 수요자를 예측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책자 제작·배포도 효과적인 예산 집행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다.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은 외국도시 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상호 방문·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을 초청해 의정 활동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며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우리 시의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80.8%의 심각한 불용률을 보였던 까닭에 2018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불용률이 22.8%로 하락하였으나, 2019년 52.1% 증액된 예산 하에서 다시 54.3%의 매우 높은 불용률이 나타났음(표-16).

<표-16> 최근 3년간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연도	예 산				성 과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목표	실적 (달성률)
2019	116,790	53,321	63,468	54.3	4회	5회 (125)
2018	76,790	59,288	17,502	22.8	4회	5회 (125)
2017	194,790	37,338	157,452	80.8	5회	2회 (40)

- 예산 불용의 주요 사유로 자매도시 사정에 따른 초청 취소 및 일정 축소를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성과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실적 달성 초과·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3년 평균 불용률이 52.6%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집행액 또한 6,000만원을 초과한 적이 없는 바, 이는 성과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액)과 달성실적(그에 따른 집행액)이 상호 괴리되어 있음을 의미함.
- 이와 같은 괴리가 발생한 이유는 2019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매도시 의회대표단이 아닌 외국도시 의원 등의 1회성 방문(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독일 연방 하원의원)을 초청 실적에 포함한데 있으며, 이러한 실적 계산방식은 향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도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표-17).

<표-17> 2019년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추진실적

연번	초청 도시	일 정	인 원
1	태국 방콕	11.25.~29.(4박5일)	니란 뿌리딛타곤 방콕시의회 제1부위원장 등 10명
2	미국 캘리포니아 주하원	11.26.	셸런 쿼크-실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및 헤수스 실파 플러턴 시장
3	미국 호놀룰루	11.19.	이카이카 앤더슨 호놀룰루 시의회 의장 등 7명
4	독일 연방하원	7.15.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연방 하원 자민당 대표 등 8명
5	몽골 울란바타르	4.28.~5.2.(4박5일)	밤브더르프 울란바타르 시의회 부의장 등 9명

- 해당 예산이 사업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이외의 의원 초청은 자제하고, 세계 각국의 더 많은 도시 의회들과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음 연도 초청대상 의회 사정을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해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

라. 국내 의정활동 교류

- 국내 의정활동 교류는 전국 시·도의회 간 상호 교류 활동과 의원 세미나 지원 등을 통해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의회 방문인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여 의회 홍보를 증진하는 사업임.
- 최근 3년간 국내 의정활동 교류 예산집행 현황 및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69.9%의 심각한 불용률을 나타낸 이후 2018년 46.0%, 2019년 47.1%로 10%포인트 이상 불용률이 낮아졌으나 다른 사업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표-18).

<표-18> 최근 3년간 국내 의정활동 교류 예산집행 현황 및 추진 실적
(단위 : 천원, %)

연도	예 산				성 과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 사유	목표	실적 (달성률)
2019	255,540	135,190	120,350	47.1	2019년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세미나 취소와 기타 지역사정으로 국내 교류협력 활동 저조	20회	20회 (100)
2018	245,340	132,505	112,835	46.0	18년 지방선거 개최로 상반기 의원 공무출장 및 교류협력 활동 저조	20회	20회 (100)
2017	414,540	124,941	289,599	69.9	17년 촛불집회, 제19대 대선 등 국내 시국상황 등의 영향으로 의원님 공무출장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	20회	20회 (100)

- 최근 3년간 불용 사유와 추진 실적을 보면, 촛불집회, 선거개최, 현안업무, 지역사정 등 각기 다른 근거로 높은 불용률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면서도 목표달성 실적은 매해 변함없이 10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예산은 과다채정하고 목표는 과소설정하였거나 목표와 예산 간 연계 없이 전년도 성과계획을 해마다 그대로 차용한 행정 편의주의의 대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연례답습적으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과다 불용한 결산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마. 공용차량 관리

- 의회 공용차량은 의회 구성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의전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현재 우리 시의회는 기능별로 업무용 차량 5대, 의전용 차량 2대, 의장전용 차량 1대, 장애의원 지원 차량 1대를 포함해 총 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표-19).

<표-19> 서울특별시의회 공용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기 능 별				소 계
			업무용	의전용	의장전용	장애의원 지원	
유 형 별	승용차	대형	-	2	1	1	4
		중형	2	-	-	-	2
	승합차	대형	1	-	-	-	1
		중형	2	-	-	-	2
소 계			5	2	1	1	9

- 공용차량의 2019년 운행거리를 살펴보면, 총 9대의 평균거리는 8,538km이고, 이들 중 운행거리가 가장 많은 차량은 의장전용 차량(16,915km), 가장 적은 차량은 장애의원 지원 차량(1,629km)으로 이들 두 차량 간 운행거리 격차가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표-20).

<표-20> 서울특별시의회 공용차량 2019년 운행거리

(단위 : km)

연번	차량명	구입 연도	유형별	기능별	총 운행거리	2019년 운행거리
1	제네시스(EQ900)	2017	대형 승용	의장 전용	64,504	16,915
2	에쿠스	2013	대형 승용	의전용	138,557	4,404
3	그랜저 하이브리드	2018	대형 승용	의전용	11,077	5,417
4	카니발 리무진	2019	대형 승용	장애의원 지원차량	1,794	1,629
5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8	중형 승용	업무용	17,930	12,821
6	쏘울 EV	2015	중형 승용	업무용	15,592	3,763
7	유니버스(대형)	2017	대형 승합	업무용	32,809	13,688
8	뉴-카운티(중형)	2018	중형 승합	업무용	6,581	5,132
9	그랜드 카니발	2010	중형 승합	업무용	111,694	13,073

- 장애의원 지원 차량의 경우 2019년 4,728만원(신규 구입: 3,634만원, 차량 개조: 1,094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신규 차량을 구입·개조하였음에도 장거리 운행에 부적합해 실제 사용량이 다른 차량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판단되는 바,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해당 차량이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애초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는 시민·전문가·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예·결산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예·결산 심의 과정에 반영해 투명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임.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018년 평균 23.6%의 불용률을 보였으며, 2019년에도 증액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전년 대비 11.0%포인트 증가한 34.1%의 높은 불용률을 나타냈음(표-21).

<표-21> 최근 3년간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9	53,800	35,479	18,321	34.1
2018	25,600	19,697	5,903	23.1
2017	26,400	20,071	6,329	24.0

- 2019년 예산이 전년대비 110% 증액된 것은 예산·결산·재정분권 토론회의 참가자를 다변화하여 발표 주제와 토론 내용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하는 동시에 논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됨.

- 그러나 실제 사업에서는 예산토론회만 전년대비 세션을 하나 더 늘리고 발표자를 2명 더 증가시키는 등 다양화 노력이 보이지만, 결산토론회와 재정분권토론회의 경우 증액된 예산에 부합할 만큼 충분히 많은 발표자와 토론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토론회가 치러졌고, 이는 고스란히 전년보다 높은 불용률로 귀결되었음(표-22).

<표-22> 전년대비 예산·결산·재정분권 토론회 참가자 현황¹²⁾

(단위: 명)

연 도	2018년		2019년		
	예산토론회	결산토론회	재정분권토론회	예산토론회	3회 평균
발표자	6	7	3	8	6
토론자	14	11	5	14	10

- 다음 연도 예산 심의 시에는 책정된 예산에 맞게 발표자와 토론자 수를 계획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에 내실을 기하고 예산 증액 취지에 맞게 과도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결산 검토 과정에서 2019년 재정분권 토론회 자료집이 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한 만큼 향후 토론회 자료집 관리·공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

12) 2018년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결산토론회는 지방선거로 인해 무산되었음.

3 성과보고서 검토

1) 총괄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성과보고서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보고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과목표 설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활용됨.
- 의회사무처는 3개 정책사업에 23개 성과지표를 설정해 추진해 오고 있는 바, 미달성(성과 달성 100% 미만) 성과지표 2개를 각각 기록했던 2017년과 2018년과 달리 2019년에는 목표했던 성과를 모두 달성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표-23).

<표-23> 2017년-2019년 의회사무처 성과달성도 총괄

(단위: 건, %)

회계연도	정책사업지표 수	초과달성(130%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미만)
2019	23(100)	6(26.1)	17(73.9)	0(0.0)
2018	23(100)	4(17.4)	17(73.9)	2(8.7)
2017	23(100)	5(21.7)	16(69.6)	2(8.7)

2) 세부 성과지표

- 의회사무처의 세부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표-24).

<표-24> 2017년-2019년 성과지표별 목표대비실적

성과지표(단위)		실적/목표 (달성률)		
		2017년	2018년	2019년
회의록 발간	목표대비실적	6회/5회 (120%)	6회/5회 (120%)	6회/6회 (100%)
	예산(천원)	33,330	38,430	44,730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목표대비실적	14회/13회 1,311명/1,300명 (100%)	13회/13회 1,143명/1,300명 (88%)	13회/13회 (100%)
	예산(천원)	127,450	166,950	224,950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목표대비실적	16건/16건 (100%)	16건/16건 (100%)	16건/16건 (100%)
	예산(천원)	1,166,282	1,113,707	1,194,755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목표대비실적	14회/12회 (117%)	13회/12회 (108%)	12회/12회 (100%)
	예산(천원)	296,264	287,910	281,994
청사시설 개선	목표대비실적	8건/8건 (100%)	8건/8건 (100%)	10건/8건 (125%)
	예산(천원)	952,000	2,592,718	1,393,700
서울의회소식지 발행	목표대비실적	6회/6회 255,000부/255,000부 (100%)	6회/6회 270,000부/270,000부 (100%)	6회/6회 270,000부/270,000부 (100%)
	예산(천원)	832,612	906,066	918,156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목표대비실적	230편/230편 (100%)	240편/240편 (100%)	280편/230편 (121%)
	예산(천원)	299,800	357,780	320,380
의정모니터 운영	목표대비실적	12회/12회 (100%)	12회/12회 (100%)	12회/12회 (100%)
	예산(천원)	40,720	40,720	40,720
의정현안 여론조사 (온라인/전화/면접)	목표대비실적	9회/10회 (90%)	10회/10회 (100%)	12회/12회 (100%)
	예산(천원)	140,000	140,000	180,000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목표대비실적	6회/5회 (120%)	7회/5회 (140%)	6회/5회 (120%)
	예산(천원)	146,960	148,253	142,574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목표대비실적	2회/5회 (40%)	5회/4회 (125%)	5회/4회 (125%)
	예산(천원)	194,790	76,790	116,790

성과지표(단위)		실적/목표 (달성률)		
		2017년	2018년	2019년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목표대비실적	13회/11회 (118%)	13회/10회 (130%)	<u>14회/10회</u> (140%)
	예산(천원)	573,480	699,223	794,176
국내 의정활동 교류	목표대비실적	20회/20회 (100%)	20회/20회 (100%)	20회/20회 (100%)
	예산(천원)	414,540	245,340	255,540
접수민원 현장조사 및 간담회 개최	목표대비실적	126건/100건 (126%)	104건/100건 (104%)	<u>139건/100건</u> (139%)
	예산(천원)	28,500	29,500	29,500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목표대비실적	5회/4회 (125%)	4회/4회 (100%)	4회/4회 (100%)
	예산(천원)	10,000	10,000	10,000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목표대비실적	34건/25건 (136%)	31건/26건 (119%)	33건/27건 (122%)
	예산(천원)	959,600	943,700	1,092,150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목표대비실적	5,019건/4,000건 (125%)	5,347건/4,000건 (134%)	<u>5,573건/4,000건</u> (139%)
	예산(천원)	150,483	165,931	271,505
정책위원회 운영	목표대비실적	16회/15회 (107%)	15회/15회 (100%)	15회/15회 (100%)
	예산(천원)	100,940	84,360	144,360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등 조사분석	목표대비실적	230건/160건 (144%)	213건/160건 (133%)	<u>492건/210건</u> (234%)
	예산(천원)	102,360	94,740	106,520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목표대비실적	53회/30회 (177%)	31회/30회 (103%)	<u>94회/50회</u> (188%)
	예산(천원)	134,000	84,000	267,500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목표대비실적	13회/10회 (130%)	13회/13회 (100%)	11회/11회 (100%)
	예산(천원)	91,050	91,050	82,850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목표대비실적	2회/2회 (100%)	1회/1회 (100%)	3회/3회 (100%)
	예산(천원)	26,400	25,600	53,800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목표대비실적	454건/200건 (227%)	220건/250건 (88%)	<u>477건/250건</u> (190%)
	예산(천원)	2,655	14,984	15,291

- 성과지표 총 23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 측정산식과 방법 등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해야 하나 단순히 ‘운영실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성과주의 예산 운영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①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②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③ 청사시설 개선 ④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등의 경우에는 유사·중복되거나 실적치 측정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과지표 설정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예산의 증감과 연계되어야 하나, ①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② 청사시설 개선 ③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④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⑤ 국내 의정활동 교류 ⑥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⑦ 정책위원회 운영 등의 경우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무관하게 목표치가 동일하거나 일률적으로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하는 등 성과지표와 예산과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성과지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 또는 초과달성(130% 이상)한 경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하나, 이에 해당하는 성과지표(6개)의 대부분이 미작성되어 있거나 부실한 원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차년도 성과지표와 계획에 환류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차원의 제도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요구됨.
- 또한 당초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의 임의 변경, 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보고를 금지하고 있는 바, ‘청소년 의회교실’은 당초 13회·1,300명이었으나, 인원을 제외한 개최횟수로 변경함. 성과계획 수립 단계부터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 수준 설정의 합리성 제고가 요구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7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경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므로 의회사무처는 향후 추경안이 제출되어 가결될 경우 이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

<표-25>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신규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p> <p>1. 예산편성</p> <p>□ 예산의 성과관리</p> <p>○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p> <p>-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작성양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제10호)」 참조</p> <p>* 예산 요구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향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p> <p style="text-align: right;">* <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 <신 설></p>	<p>【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p> <p>1. 예산편성</p> <p>□ 예산의 성과관리</p> <p>○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p> <p>-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작성양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제10호)」 참조</p> <p>* 예산 요구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향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p> <p>* <u>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함</u></p> <p>* <u>또한,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u></p>